

여권 분실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 ※ 뒤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	
신고인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		
	주소			
	전화번호	휴대전화		
대리인 <small>(대리 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)</small>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		
	신고인과의 관계			
여권 정보	여권 번호	발급일	기간 만료일	
분실경위	일시(추정)	년 월 일 시		
	장소(추정)	국가		
		도시		
		세부주소		
		건물 등 세부주소		
	분실 사유	[] 본인 분실	[] 절도·강도 등 범죄피해	
	상세내용			
	분실 후 조치사항			
	당시 목격자 <small>(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</small>	이름	관계	연락처
	분실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	<small>※ 제출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</small>		
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	[] 1회	[] 2회	[] 기타(회)	
	첫 번째 분실			
	두 번째 분실			
	그 밖의 추가 분실			

(뒤쪽)

이 신고서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며,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외교부장관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법정대리인 동의서(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대리인 제출서류	1.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. 위임장 1부 3.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(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나.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다.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(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·정신적 질병,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이번 여권 분실 신고는 "최근 5년간 여권 분실 횟수 및 경위"란의 분실 횟수 및 경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- 「여권법」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,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「여권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 신청 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(2년 또는 5년)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「여권법」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권 분실 후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경우 또는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그 경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을 통해 여권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